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1. 11. 29. 개정 판 (시행 2022. 3. 1.) → 2022. 3. 7. 개정 판 (시행 2022. 3. 1.)

바뀐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29/compare?from=1235&to=1279>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3:42:51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① 본 대학원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① 본 대학원 <u>학업을 지원하기 위한</u>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8-02-28)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0-04-06) ③ <u>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정규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재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의 경우 초과 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3-07></u> ④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신설 2022-03-07> ⑤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3-07> ⑥ <u>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 <신설 2022-03-07></u>
제14조(장학금 지급 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등록금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① 장애인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육이념구현장학금 ②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 ③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④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장학금 지급 제한)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장학금 지급금액은 수업료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적용한다. <개정 2022-03-07> ① <u>진학장학금, 기타장학금, 장애인장학금, 입학성적우수장학금, 교육이념구현장학금 <개정 2022-03-07></u> ② 교내 근로성 장학금과 학술장학금 ③ 교외 장학금의 경우 해당 장학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할 경우 ④ 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① 본 대학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별표1]과 같다.
- ② 연구조교장학금,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정규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단,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재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의 경우 초과 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 ④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 ⑤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⑥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

제14조 중 "등록금"을 "수업료"로 하고, "적용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22-03-07>"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장애인장학금"을 "진학장학금, 기타장학금, 장애인장학금"으로 하고, "교육이념구현장학금"을 "교육이념구현장학금 <개정 2022-03-07>"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